

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4. 12.
발 의 자 : 광명교의원외 7인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선임대상 위원이 소속한 기관·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 등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지난하기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등 지급내용과 일부조항 및 자구를 삭제, 정리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위원선임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정함(안 제3조).
- 나. 결산검사위원 중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외의 위원에게 지급할 일비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.
- 다.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12조 제2항).
- 라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등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,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 을 “대전 광역시 결산검사위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위원”을 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(이하 “시의회”이라 한다)의 의결로써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②대전광역시의회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 외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

1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,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
2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
3. 그 밖에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시의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궐원된 경우, 시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이하 “시의회의장”이라 한다)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시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중 “의회”를 각각 “시의회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대전광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“의회의 의원”을 각각 “시의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기간중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일비의 지급기준은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제3조를 준용한다.

③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여비의 지급기준은 「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명 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 결산 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<u>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</u>(이하 “<u>위원</u>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.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(이하 “<u>의회</u>”라 한다)의 경우의 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<u>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</u>(이하 “<u>위원</u>”이라 한다) ---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(이하 “<u>시의회</u>”이라 한다)의 의결로써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②대전광역시의회의원(이하 “<u>시의원</u>”이라 한다) 외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,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. 그 밖에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의회에서 위원이 선임된 위원이 비회기중에 사임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</p>	<p>③ 시의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궐원된 경우, 시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이하 “시의회의장”이라 한다)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④ 시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</p>
<p>제4조(위촉기간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촉기간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시의회 ----- -----</p>
<p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,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대전광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
<p>제6조(대표위원)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.</p> <p>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</p> <p>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6조(대표위원) ①----- ----- 시의원 ----- --</p> <p>②----- ----- 시의회 ----- -----</p> <p>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</u> ①위 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 1. 세입·세출의 결산 2.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.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	〈삭제〉
<u>제8조(검사협조)</u> 시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	〈삭제〉
<u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u> (생략)	<u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u> (현행과 같음)
<u>제10조(일비의 지급)</u>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<u>〈신설〉</u>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	<u>제10조(일비의 지급)</u> ①위원회 위촉하여 위촉기간 중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일비의 지급기준은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제3조를 준용한다. ③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<u>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</u> <u>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</u>는 일비를 지급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2조(여비의 지급)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시의원 -----</p> <p>----- 시의회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.</p>	<p>제12조(여비의 지급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여비의 지급기준은 「대전광역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4조를 준용한다.</p> <p>〈삭제〉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
<p>[별표 1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위 촉 장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○</p> <p>대전광역시의 ()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까지 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 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전광역시의회 의장</u> (인)</p> </div>	<p>〈삭제〉</p>						
<p>[별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액 수</td> </tr> <tr> <td>일 비</td> <td>80,000원</td> </tr> <tr> <td>여 비</td> <td>국내여비규정(별표 2) 여비지급규정 구분표상의 부지사 상당액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80,000원	여 비	국내여비규정(별표 2) 여비지급규정 구분표상의 부지사 상당액	<p>〈삭제〉</p>
구 분	액 수						
일 비	80,000원						
여 비	국내여비규정(별표 2) 여비지급규정 구분표상의 부지사 상당액						
<p>〈신설〉</p>	<p>〔별지 서식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위 촉 장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○</p> <p>대전광역시의 () 결산검사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까지 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 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전광역시의회 의장</u> (인)</p> </div>						

관련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53조 (재무회계의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9조 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 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재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

부칙 [2005.12.30 제19226호]

제2조(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第32條 (議員의 議政活動費等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.

1. 議政資料의 菁集·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
2.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125條 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 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查委員의 檢查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日 이내에 市·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·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.

③第1項의 檢查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6조 (결산승인)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2 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,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7조 (결산검사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第35條 (決算) ① 管理者는 每 事業年度末日 現在로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.

② 管理者는 每 事業年度 終了후 2월 이내에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 당해年度의 事業報告書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함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기타 書類에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查報告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제2조 (의정활동비 지급)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- 제3조 (월정수당)**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지급 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부 칙 (조례 제3408호)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.

[별표 1]

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 (제2조 관련)

구 분	의정활동비	
	의정자료수집	보조활동비
지급액	월 1,200,000원	월 30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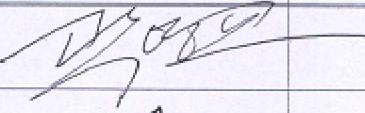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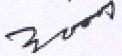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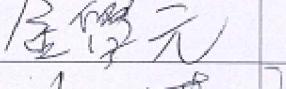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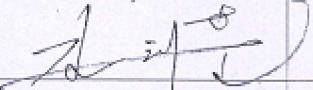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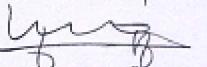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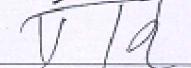
[별표2]

월정수당지급기준표 (제3조 관련)

지급기준	지급액
월	2,590,000원

【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발의 및 찬성의원명단

의원	서명	비고
곽영교		
전 11월 12일		
김 3월 8일		
김 치호		
송 재웅		
장 운천		
○) 김 희		
김 3월 8일		